임실군의회 공고 2015 - 42호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나. 법령에 위임 받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해소 및 지방자치를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비영리 법인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구체화**(제13조)

나.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규정사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15. 7. 8. ~ '15. 7. 28)결과 : 특이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제8조(등록)를 삭제한다.

제12조(등록취소)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사업비”를 “사업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제1항에 다음을 신설한다.

1. 기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자원봉사 활동 및 체험행사

2. 군장병 및 전의경 등 위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 (생 략) 제8조(등록)①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 한 때 3.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게재·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생 략)	제1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및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 활동 및 체험 행사 2. 군장병 및 전의경 등 위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 ②(현행과 같음)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계획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해당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49			
정 책 명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최낙현	전화번호	063-640-202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 조례 제13조의 1항에 다음 각호를 신설 - 기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자원봉사 활동 및 체험행사 - 군장병 및 전의경 등 위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8월 12일

주민복지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

주민복지과장 귀하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